



공정거래위원회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09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위원회는 중소기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(10. 3.)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. 9. 7.~ 10. 1. 기간 중 「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」를 운영할 계획입니다.

3. 이와 관련, 귀 단체에서 회원사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(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)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 유형

- 가.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
- 나. 하도급대금을 장기(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)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
- 다.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
- 라.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, 어음할인료·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마.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(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)하는 행위
- 바.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,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(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)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
- 사. 하도급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,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